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3. 11. 17.

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1. 17.

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·시행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고성군민 건강 보호에 노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감염병에 대한 용어 명확화(안 제2조)
- 나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반영(안 제4조제1항)
- 다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 내용 추가 및 정비(안 제5조 제4호, 제7호, 제8호)
- 라. 감염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내용 신설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7조, 제49조의2
- 나. 예산조치: 2024년 당초 예산 편성 예정
- 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40444(2023. 10. 23.)]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 13호
 - 가) 예고기간: 2023. 10. 12. ~ 2023. 11. 1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4조(중전의 제3조)제1항 중 “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”을 “제7조제1항 및 제3항”으로, “매년 수립”을 “수립·시행”으로 한다.

제5조(중전의 제4조)제4호 중 “홍보”를 “홍보를 실시하며,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역물품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감염취약계층 보호) ① 군수는 법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·협력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감염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제2조</u> (생 략)</p> <p><u>제3조</u>(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</p> <p>① 군수는 「<u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의 기본 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<u>시행 계획</u>”이라 한다)을 <u>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 <p><u>제4조</u>(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)</p> <p>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<u>홍보</u></p>	<p><u>제2조</u>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<u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</p> <p><u>제3조</u>(현행 제2조와 같음)</p> <p><u>제4조</u>(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</p> <p>① ----- <u>법 제7조제1항 및 3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5조</u>(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)</p> <p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홍보를 실시하며,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역물품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
5.·6. (생 략)
8.·9. (생 략)
제5조 ~ 제8조 (생 략)

<신 설>

제9조 (생 략)

5.·6. (현행과 같음)
7.·8. (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)
제6조 ~ 제9조 (현행 제5조부터
제8조까지와 같음)

제10조(감염취약계층 보호) ① 군수는 법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·협력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감염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

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가. 관련 조문: 안 제5조 제4호, 안 제10조

나. 비용 발생 요인: 감염병 예방 추진을 위한 협력·협약 기관의 종사자 및 관리대상자에 대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
다. 소요예산: 20,400천원(연간)

- (교육교재)3,500원×3,000명= 10,500천원

- (예방홍보물품)3,300원×3,000명= 9,900천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협력·협조한 기관·단체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은 연간 20,400천 원으로 예상되며, 수반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보건행정과장 조 석 래

□ **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**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,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 18., 2015. 7. 6., 2020. 3. 4., 2020. 12. 15.>

1.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
 2.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
 3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
 4.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
 5.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 6. 감염병에 관한 조사·연구
 7. 감염병병원체(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,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) 수집·검사·보존·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(藥劑耐性 監視)
 8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
 - 8의2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
 9.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
 10.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·방역 물품의 비축
 11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
 12. 기후변화,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 조사·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
 13.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
 14.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 15.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, 교육 및 훈련
 16.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,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
 17.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, 특성 분석,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, 보고서 발간 및 지침(매뉴얼을 포함한다) 고시
- ③ 국가·지방자치단체(교육감을 포함한다)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,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6.>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·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6.>

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)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 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8. 11.>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., 2020. 3. 4., 2020. 12. 15., 2021. 3. 9.>

1. 감염병 예방·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
2. 주요 감염병의 예방·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
- 2의2. 감염병 대비 의료·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
- 3의2. 「의료법」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
4.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
5.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
6.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와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6. 13.>

④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8. 11.>

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49조의2(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(이하 “감염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·방역 물품(「약사법」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)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15.>

②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3. 9.>

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,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 3. 9.>

[본조신설 2020. 3. 4.]